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제1호
----------	----------

발의년월일 : 2007. 1. 12.
발의자 : 탁석주,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이문상

1. 의결주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법률 제19702호, 2006. 10. 17)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을 반영코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별표 2의 현지교통비(1일당) 10,000원 ⇒ 20,000원으로 인상함
(안제7조제2항)

나. 별표3의 국가 및 시도별 등급에 따라 지급하던 국외여비를 단일화 함 (안제7조제3항)

4. 법적근거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국내여비의 지급범위(제7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지 급 기 준 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회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별표 3]

국외여비의 지급범위(제7조제3항 관련)

(단위:미불화)

구 분	항공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0야당)	식 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 현 행 》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7조제2항)

(단위 : 원)

지급기준액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u>10,000</u>	46,000	25,000

-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이나 남해군 등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에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 2]

국내여비의 지급범위(제7조제2항)

(단위:원)

지 급 기 준 액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u>20,000</u>	46,000	25,000

1. 사천시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 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현 행》

[별표 3]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0야당)	식 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등급구별이 없는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등급구별이 없는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실비액	1등정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0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에 의거 지급

《개정안》

[별표 3]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0야당)	식 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관련법령 발췌

대통령령 제 19702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표중 시·도의회 의원과 시·군·구의회 의원 란의 현지교통비 (1일당) 란 “10,000”을 각각 “2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통령령 제1932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의 신설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